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03호 2013. 12. 31.(화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
일부개정규칙 ----- 1

고 시
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-127호 사방지정고시 ----- 4

공 고
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1455호 공인등록공고 ----- 7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1463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
공람 공고 ----- 8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1464호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안)
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- 15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3년 12월 31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19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소속공무원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”으로, “기타사고”를 “그 밖에 사고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본청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전단 중 “40,000원”을 “5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화재 및 침입자등 긴급사태 발생시”를 “화재, 침입자 및 비상근무 등 발생 시”로, “조치후”를 “조치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우에만”을 “경우에 30,000원을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에 의하여”를 “각 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1대이상”을 “1대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체없이 다음 각호”를 각각 “지체 없이 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기관”을 “해당기관”으

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3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”로, “2가지이상”을 “2가지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당해구역”을 “해당구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9조제2호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조이상”을 “1조 이상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4조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규정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4. 1. 1. 부터 시행한다.³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- 127호

사 방 지 지 정 고 시

2013년도 사방사업(계류보전) 시행지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·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3. 12. 30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방지 지정내역 :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

소재지				면적(m ²)		사방사업종류	비고
시	구	리·동	지번	전체면적	지정면적		
인천	서구	공촌동	산151번지 외 5개필지	586,720	676	계류보전	

2. 사방지 지정사유 : 2013년 사방사업 시행지

3. 지정사업의 종류 : 사방사업(계류보전)

4. 사방지 지형도면 : 붙임도면 참조

5.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녹지경관과 녹지팀(032-560-47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사방지 지정 명세서

토 지 소 재 지						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		지 정 적 (㎡)	비고
시	구	리동	지번	지목	지적 (㎡)	주 소	성 명		
인천	서구	공촌	산151	임	4,562	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-3	김영대 외 10명	46	
			산155	임	3,273	서울특별시 독서당로 191 번길 3동 1002	허영중	112	
			산157-1	임	572,332	서울특별시 독서당로 191 번길 3동 1002	허영중	175	
			270	전	218	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0-2	배현미	40	
			272	답	2,565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6-7	임호연	70	
			299	구	3,770	건설부		233	
소 계			6필지		586,720			676	

번호: 2013년도 제1호

사방지 지정구역 도면

사업명 : 2013년 사방사업(계류보전)



<지정내역>

토지 소재지				사방지 지정	
시·군, 읍·면, 동·리	지번	지목	면적	지정면적	고시번호·일자
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	산151	임	4,562	46	
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	산155	임	3,273	112	
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	산157-1	임	572,332	175	
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	270	전	218	40	
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	272	답	2,565	70	
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	299	구	3,770	233	
계				676	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1455호

공인 등록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12. 27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○ 등록 공인 인영

공인명	규격	인영	등록사유	최초 사용일	비고
가정2동장인 /민원전용	2.1cm x 2.1cm		인증기 구입	2013.12.27.	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/가정2동민원전용	2.4cm x 2.4cm		인증기 구입	2013.12.27.	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1463호

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 공람 공고

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와 관련한 ‘현상변경 허용기준’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. 이에 현상변경 허용기준(안)에 대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고시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2월 30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대상 문화재 내역

o 시지정문화재 (2개소)

종별	문화재명	소재지	비고
기념물 제59호	반남박씨 대중종 묘역	인천. 서구 대곡동 산151-1	
기념물 제61호	평산신씨 중중묘역	인천. 서구 대곡동 산120-1	

2. 허용기준의 수립 목적

문화재 주변의 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하여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,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될 수 있도록 함.

3.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

가. 기준안 허용범위 내 건설행위 : 인천서구청 문화재담당부서(문화관광체육과)와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

나.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건설행위 : 기존과 동일(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)

4. 공람장소 :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, 서구청(문화관광체육과) 및 검단동(1~5) 주민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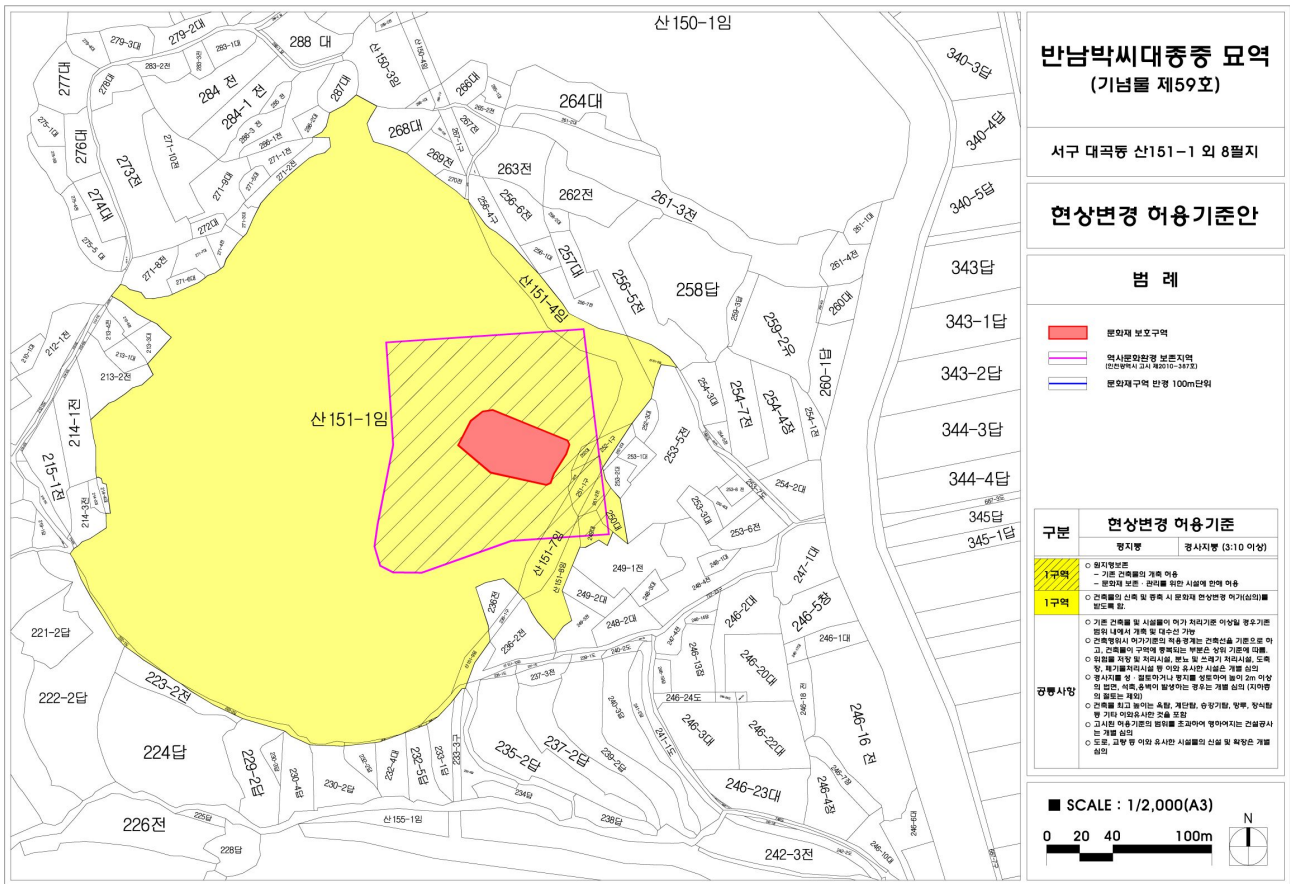
5. 공람기간 : 2013. 12. 30.(월) ~ 2014. 1. 14.(화) 15일간

6. 의견제출

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제출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(☎560-4343)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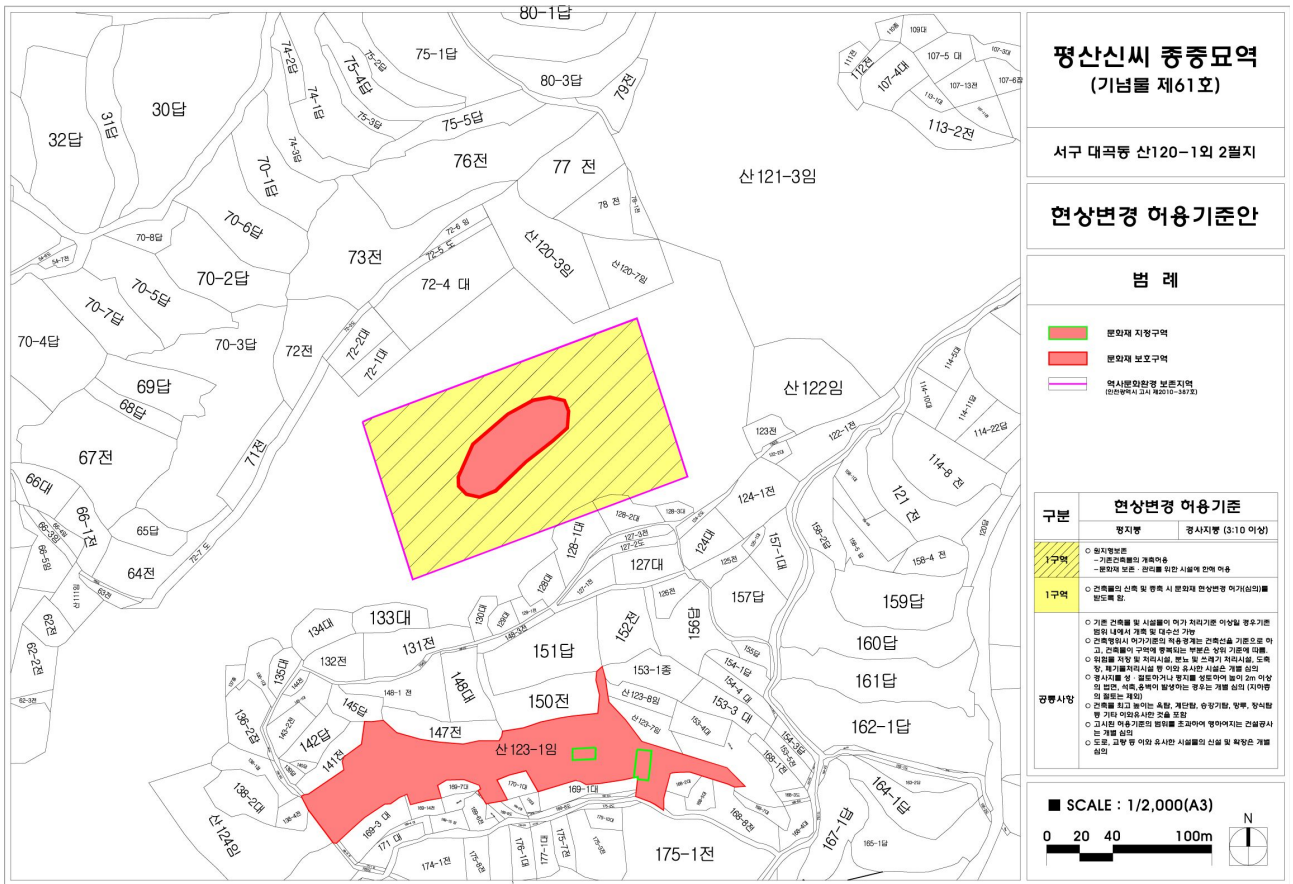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9호 반남박씨대종중 묘역

구분	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지형보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 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이 가능 건축행위시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)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
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1호 평산신씨 종중묘역

구분	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지형보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 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이 가능 ○ 건축행위시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름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)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

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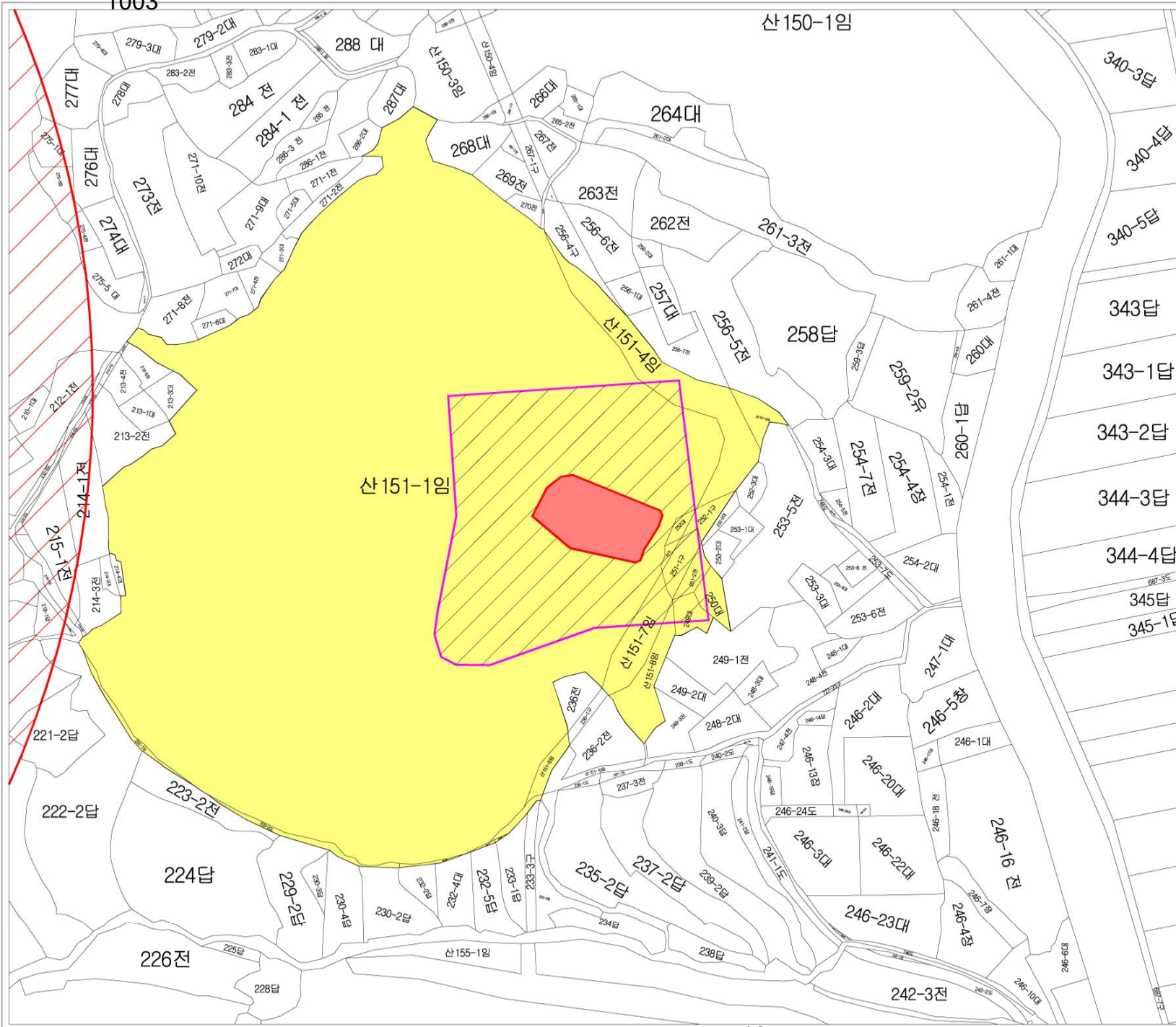
1. 성 명 :
2. 주 소 :
3. 생년월일 :
4. 전화번호 :
5. 의견사항

○ 문화재명 :

○ 의 견

-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

반남박씨 대중중 묘역 (기념물 제59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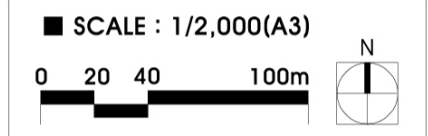
서구 대곡동 산151-1 외 8필지

현상변경 허용기준안

범례

- 문화재 지정구역
- 대곡동 지석묘군 현상변경허용기준 (인천광역시고시 제2011-43호)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387호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안	
	평지형	경사지형 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지방보존 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 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존 이상일 경우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○ 건축영위시 허가문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상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○ 위원을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○ 경사지를 성·굴토이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(지마감의 굴토는 제외) ○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방풍, 장식탑 등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경사는 개별 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

평산신씨 종중묘역 (기념물 제61호)

서구 대곡동 산120-1외 2필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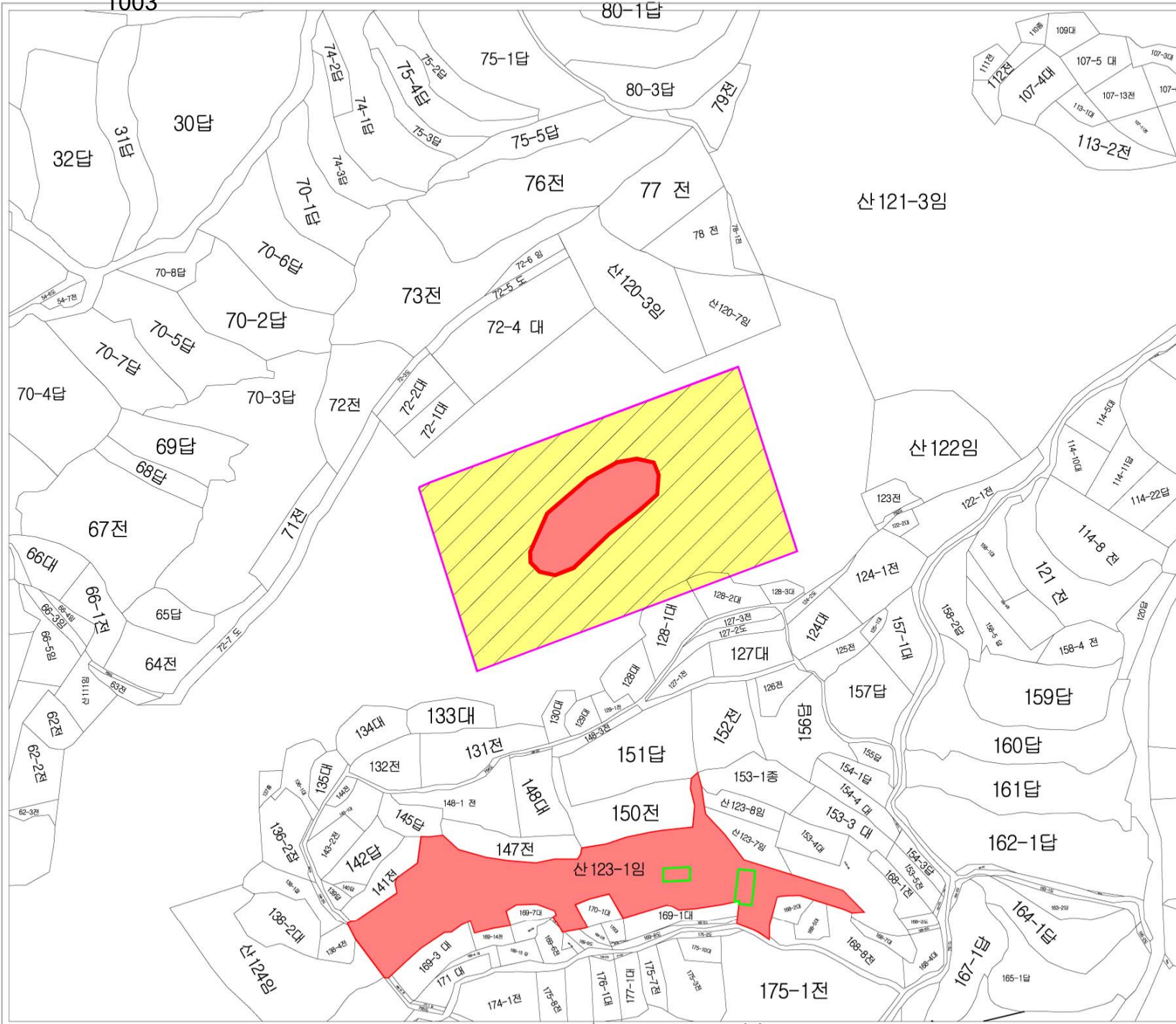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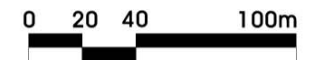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안

범례

- 문화재 지정구역
- 문화재 보호구역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(인한법역시 고시 제2010-387호)

구분	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	
	평지형	경사지형 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지형보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건축물의 개축허용 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허가 신청시 당해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. 	
공용사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○ 건축영위시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용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종횡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○ 위원을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○ 경사지형 상·굴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(지머방의 굴토는 제외) ○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방부, 장식탑 등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SCALE : 1/2,000(A3)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1464호

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안)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

2011년에 시지정문화재(대곡동 지식묘군)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후, 인천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되어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개선 요구가 있어 「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안)」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인천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12월 30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대상문화재

종별	문화재명	소재지	비고
기념물 제33호	대곡동 지식묘군	인천 서구 대곡동 산123-1	

2. 조정취지 : 지역 여건의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안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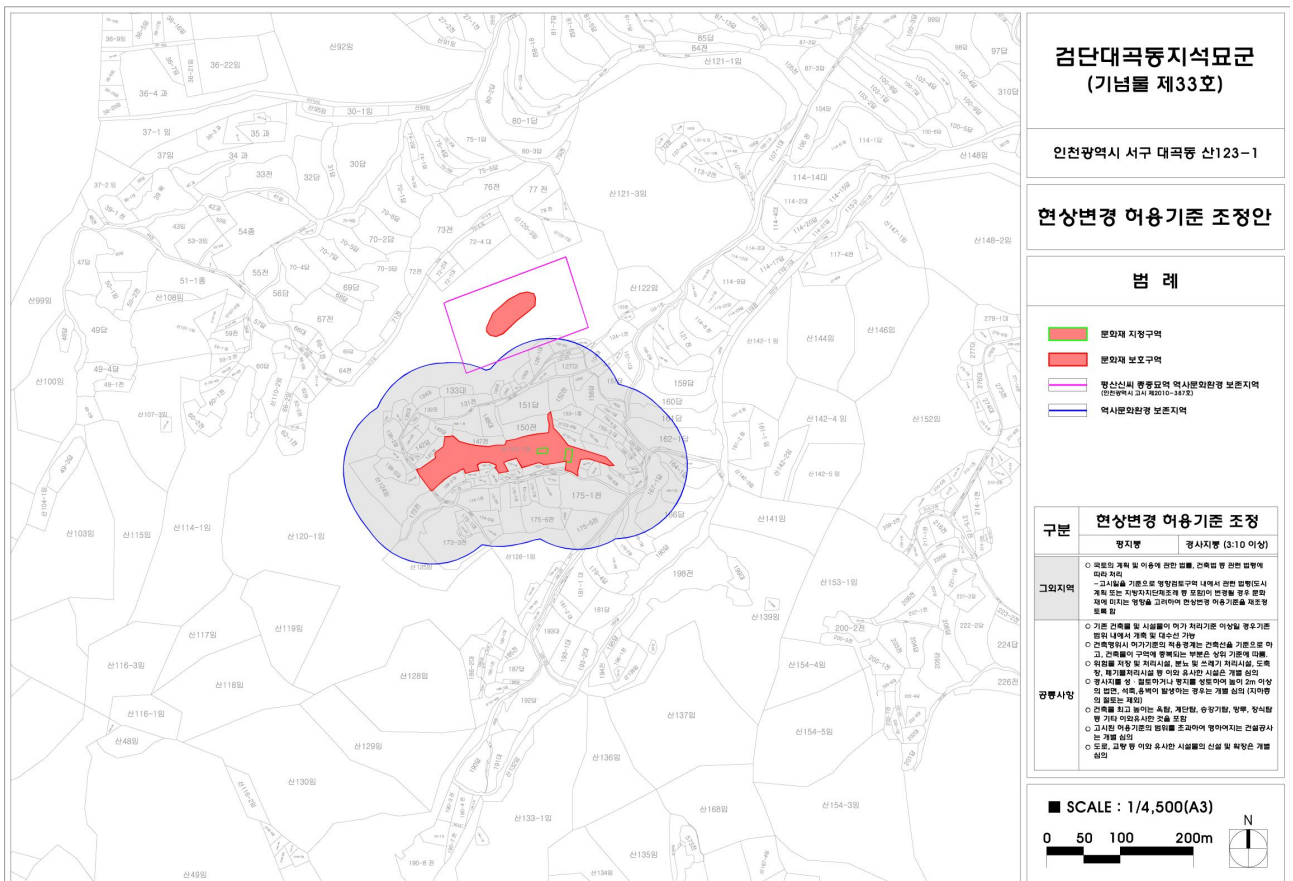
3. 공람기간 : 2013. 12. 30.(월) ~ 2014. 1. 14.(화) 15일간

4. 공람장소 :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, 서구청(문화관광체육과) 및 검단동(1~5) 주민센터
5. 관계도서 : 공람 장소에 비치(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및 검단동 주민센터)
6. 의견제출 :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(☎560-4343)

붙임 의견서 서식 및 문화재 현상변경 조정(안) 각 1부
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3호 검단대곡동지석묘군

구 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
그외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항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 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이 가능 건축행위시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름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)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

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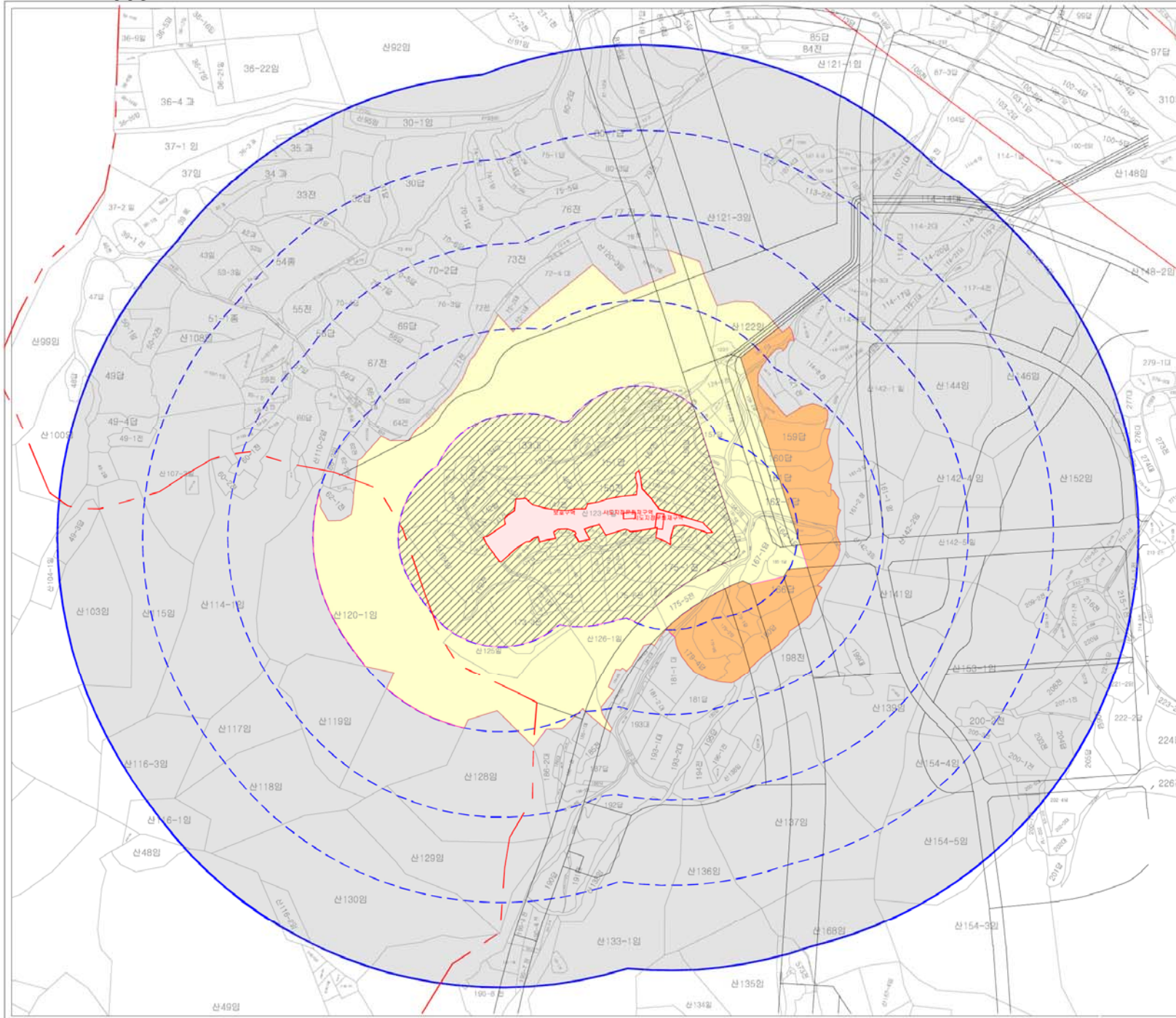
1. 성 명 :
2. 주 소 :
3. 생년월일 :
4. 전화번호 :
5. 의견사항

○ 문화재명 :

○ 의 견

-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

기념물 제33호

대곡동지석묘군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-1

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

범례

- 문화재구역
- 영향검토구역
- 1구역
- 1구역
- 2구역
- 그외구역

구분	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
1구역	원치형 보존 - 기존 건축물의 계획이유 - 문화재 보존 권리를 위한 시설에 한하여 허용	
1구역	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허가 신청시 당해건축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	
2구역	최고높이 14m 이하	최고높이 14m 이하
그외 구역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그시설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전면 방풍도사계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도없이 변경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함	
공통 사항	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계획된 대수신 기장 문화재와 조화되는 역사 경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목장, 폐기물 처리 시설인 여와 유사한 시설은 계획상의 경사지붕 상 - 필로아거나 명지붕 형태로 하여 높이 2m 이상의 집먼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(지이행)의 필요는 제외, 지반산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방부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용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,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도 개별 심의 영향검토구역 200m 이내 지역에서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허가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함	

Scale : 1/4500



검단대곡동지석묘군 (기념물 제33호)

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-1

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

범례

- 문화재 지정구역
- 문화재 보호구역
- 평산신씨 중종묘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387호)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구분	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	
	평지형	경사지형 (3:10 이상)
그외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시 기준으로 영랑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률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	
공용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○ 건축평위서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일 경우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○ 위원을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터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(지하층의 굴토는 제외) ○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방수, 장식탑 등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포함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	

